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REDACTED]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최철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공장)

대표이사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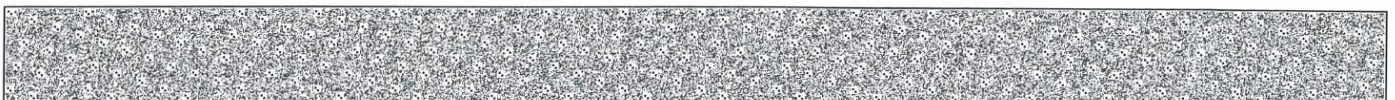
소송대리인 [REDACTED]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64,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5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 한다)가 발주하는 [REDACTED] 신규 및 이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한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설계에 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 시트를 제공받고, 위 데이터 시트를 기초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5. 9. 24. [REDACTED]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REDACTED] 옥외저장탱크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데이터 시트(이하 '이 사건 데이터 시트'라 한다)를 제공받고, 이 사건 데이터 시트를 기초로 2015. 9. 16.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아래와 같은





환경정책연구보고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진천공장 신규 및 이전설치공사 계약서

☐ 계약금액: 일금 삼십삼억 원(W3,300,000,000)

☐ 대금 지급 조건

결제조건: 정기결제

결제방법: - 1차 기성 20% : 660,000,000(vat 포함) - 원자재납품 후
 - 중도금 1차 30% : 990,000,000(vat 포함) - 제작공정을
 - 중도금 2차 20% : 660,000,000(vat 포함) - 현장도착도
 - 중도금 3차 20% : 660,000,000(vat 포함) - 설치완료
 - 잔 금 10% : 330,000,000(vat 포함) - 시운전완료

☐ 계약기간: 2015년 11월 05일부터 2016년 04월 30일까지

☐ 기타

첨부: 기본계약서, DATA SHEET, 물량단가표, 물량LIST

기본계약: 계약시 제공된 내역서 준함

기본계약서

제2조 (공사범위)

1. 진천공장 장비류에 관한 제작, 설치, 승인업무에 관한 일괄

① 제작도면의 승인 및 제작, 설치 일괄공사이며, 승인업무 포함

③ 모든 자재, 구매품 일괄 포함(단, 지정업체 구매품의 경우 동일 사양시 상호 협의후 변경 가능)

④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피고가 제공하는 DATA SHEET를 기준으로 진행

⑥ 원고는 요구 조건에 부당함이 없으면 계약에 준하여 실행해야 한다.

⑦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도급이며,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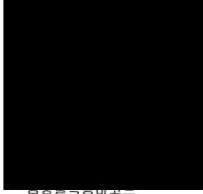
- 원고는 승인도면 작성 후 피고와 발주처에 승인도면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⑧ 납품시 외부 및 내부상태는 DATA SHEET 기준으로 하며, 변경시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결제, 추가비용 및 공제 관련

① 제작물 증, 가감은 DATA SHEET 및 물량 LIST 기준으로 계약단가 적용 정산하며, 최종 납품완료 후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최종기성시 이를 반영한다.

- 모든 장비는 DATA SHEET 내용에 준하여 작업하며, 변경시 상호 협의후 반영한다.



② 제공된 물량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 제작도면은 원고는 피고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기타 경비 및 잡자재는 원고가 전량 구매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 및 검사)

1. 관계 법규상 또는 피고의 요구시 원고는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공정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적극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제출후 피고가 승인한 I.T.P와 절차서에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I.T.P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변경후 승인하도록 한다.

제16조 (위임 및 재하도급 금지)

1. 원고는 피고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제작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해서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 진행의 보류와 원고의 공사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이하 '이 사건 보류요청'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5. 11. 2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발주한 내역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에게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원고가 발주하여 납품받은 원자재와 납품받을 예정인 원자재의 내역을 정리하여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 [REDACTED]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12. 15.까지 공사를 보류한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15. 다시 [REDACTED] 내부사정으로 2015. 12. 31.까지 보류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2. 16. [REDACTED] 2015. 12. 9.까지 진행된 이 사건 원도 급공사에 관한 내역을 첨부하여 선급금(1,3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월 기성금(1,05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위 내역에





는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원고에 관한 항목에 대한 청구금 665,711,685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진천공장 신규이전 설치 (진행상황 및 기성 요청서)					
구분	업체명	계약	공정율	진행내용	청구금 (선금금 제외)
[Redacted]	원고	11.05	15%	-세부제작도 설계진행(건축 반영)	665,711,685
				-제작도 일부 승인 요청	
				-원자재 일부 발주 및 납품	
				-총 450TON 중 100TON(주변자재)	
				(제작일정 단축을 위한 주변자재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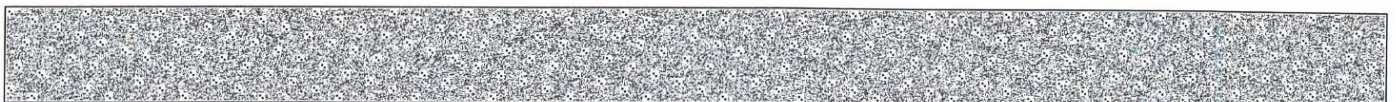
바. 이후 피고는 1차 기성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공사재개 여부를 문의하는 원고의 2016. 5. 31.자 및 2016. 8. 10.자 이메일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1차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원고의 2016. 8. 22.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2016. 8. 25. [Redacted]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1차 기성금 요청에 대하여 현대페인트와 협의 중이라는 회신만 하였으며, 1차 기성금지급 일정을 확정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원고의 2016. 11. 8.자 내용증명우편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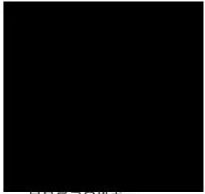
사. 이에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10일 이내에 1차 기성금의 지급 및 공사진행 여부 통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5.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 24, 25, 34, 35, 3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Redacted] [Redacted]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1차 기성금 지급의무를 이행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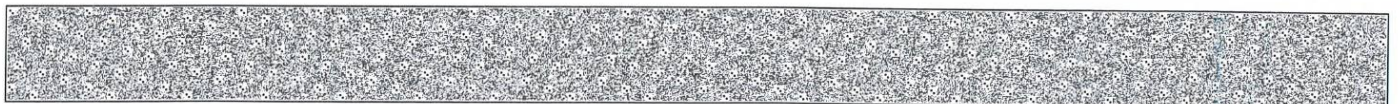
부분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위해 원고가 부담한 비용인 ① 자재구매비 106,856,970원, ② 위 자재 하차 및 이동을 위한 장비비 902,000원, ③ 제작물 설계용역비 중 76,320,000원, ④ 이행보증증권발급비 1,835,520원, ⑤ 위 비용들 중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20,585,710원의 합계 206,500,200원(= 106,856,970원 + 902,000원 + 76,320,000원 + 1,835,520원 + 20,585,71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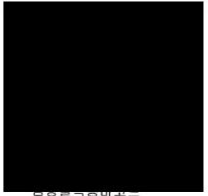
3.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6, 14, 15, 17, 24, 25, 27, 29, 30, 32, 36, 37, 39,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5. 11. 16. 주식회사 [REDACTED] (이하 [REDACTED] 한다)에 원자재를 발주하여 2015. 11. 25. 별지 목록 순번 30 내지 46 기재 각 철판을 포함한 원자재를 납품받았고, 2015. 11. 17. 주식회사 [REDACTED] (이하 [REDACTED] 한다)에 원자재를 발주하여 2015. 11. 25.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각 철판을 포함한 원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이 진행된 부분 등을 근거로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보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7. 5. 15. 1차 기성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7. 6.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1차 기성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2017. 6. 26. 적법





하게 해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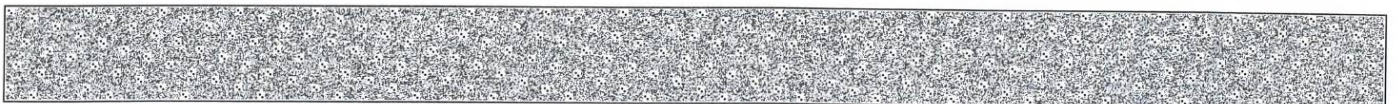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REDACTED] 공사 보류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① 기본설계{BD(Basic Drawing), 발주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시공될 플랜트의 성능이나 플랜트를 구성하는 장치들의 기능·용량을 정한 것} 완성, ② 상세설계{DD(Detail Drawing), 시공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위 기본설계를 기초로 제작될 장치들의 세부적인 설계도면} 완성, ③ 원고의 자재 구매{MP(Material Purchase)}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자재 구매도 피고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보류요청 당시에는 아직 기본설계와 상세설계가 승인되지 않았고, 피고의 자재구매 승인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공사 자재를 발주하였으므로, 피고는 1차 기성금 지급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자재 구매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피고가 소모품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제작 과정이 아닌 자재 구매를 하는 단계까지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확정 이후에 자재구매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 23호증, 을 제7호증의 2,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원고가 승인도면 작성 후 피고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11. 17. 피고에게 제출한 마스터 스케줄에는 이 사건 공사가 2015. 11. 1주부터 ① 기본설계(BD), ② 자재구매(MP), ③ 상세설계(DD)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5. 12. 8. [REDACTED] [REDACTED] 제출한 마스터 스케줄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장비류에 관하여 2015. 12. 1주부터 ① 기본설계(BD), ② 상세설계(DD) 및 자재구매(MP)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REDACTED] [REDACTED] 및 [REDACTED] 2015. 11.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설계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원도급공사 및 이 사건 공사의 최종적인 설계도면을 확정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거시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가 확정된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제작'을 하는데 승인도면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위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구매에 관하여는 도면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거나, 그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선급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자재를 납품받은 이후 1차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어 자재의 구매는 원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② 피고의 직원 [REDACTED] 2015. 11. 23. 원고의 직원 [REDACTED] [REDACTED] 보낸 이메일 내용에 현재까지 진행된 자재류 등 진척상황, 구매품류 발주 상황을 보내달라고



명시하였다.

③ 피고는 2015. 12. 16. [REDACTED] 기성금을 청구할 때 원고의 청구금을 포함하였고, 2017. 5. 15. 인천지방법원 [REDACTED] 파산 사건에서 [REDACTED] 대한 파산채권 신고를 할 때에도 원고의 청구금을 포함하였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1차 기성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2017. 6. 26.에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신뢰이익 배상의 가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즉, 즉 신뢰이익의 배



상을 구하고 있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배상청구도 허용되고, 다만 그 지출된 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면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범위

1) 자재구매비용과 장비비용

가) [redacted] [redacted] 발주하였다는 부분

원고가 2015. 11. 17. [redacted] [redacted]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철판을 발주하여 2015. 11. 25.까지 위 철판 일부를 각 납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4, 15, 16, 17, 22, 25,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납품받은 철판의 하차 및 이동을 위한 지게차 사용료로 902,000원을 지출한 사실, 이후 공사가 보류된 기간 동안 원고가 일부 철판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남은 철판(이하 '잔존 철판'이라 한다)의 수량 및 중량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위 잔존 철판에 대하여 [redacted] [redacted] 지급한 돈은 별지 목록 중 매입금액란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190,759,305원인 사실, 잔존 철판들의 가치는 별지 목록 중 판매금액(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잔존 철판을 [redacted] [redacted] 판매하였다)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98,152,5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 법원의 2018. 12. 12.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원고는 갑 제46, 47호증을 제출하면서 중량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고정된 값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나, [redacted] 순번 14 기재 자재의 경우 1,807.3596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807임에도 갑 제47호증에서 1,808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량값 1,807에 매입단가 2,640원을 곱하면 4,770,480원임에도 4,773,1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오류



가 있다. 이에 다시 중량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고정된 값으로 설정하고 판매단가와 매입단가를 각 곱하여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을 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구입한 철판의 구매비용 및 철판의 하차 및 이동을 위한 장비비용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REDACTED] [REDACTED] 구입한 잔존 철판의 매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 및 장비비용의 합계액 93,508,745원(= (190,759,305원 - 98,152,560원) + 90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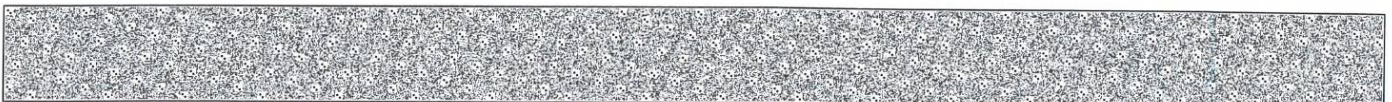
나) 주식회사 [REDACTED] 발주하였다는 부분

원고는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한다)로부터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4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8. [REDACTED] 에 자재(항목 SUB PLATE, 수량 45 SH'T)를 발주한 사실, 원고가 2016. 5. 31.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REDACTED]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5. 11. 23.자, 2015. 11. 25.자 및 2015. 12. 15.자 이메일에는 [REDACTED]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REDACTED] 발주한 자재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계비용

감정인 [REDACTED]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의 이행을 위하여 96대 장치의 제작도면을 완성하였고 그 기성금액은 76,3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설계비용 76,320,000원은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3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행보증증권발급비용

원고가 이행보증증권발급 비용 1,835,52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이행보증증권발급 비용은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5,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자비용

원고는 자신의 자본을 이 사건 계약 진행을 위한 자재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투입한 자본을 다른 일에 이용하지 못한 손해 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실제 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합인 20,585,710원도 손해배상액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실제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면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실제 발생한 이자라고 선택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닌 특별손해이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 당시 원고가 자재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갑 제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7.경 [REDACTED]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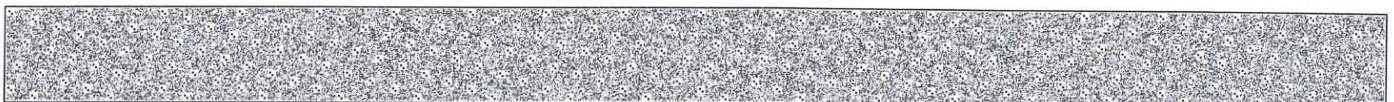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REDACTED] 자금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지급할 것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 중 [REDACTED] 지급한 자재구매비용 관련 부분은 그 자재구매비용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2

거래상대방	입금날짜	금액(단위: 원)	합계액(단위: 원)
	2015. 11. 17.	82,500,000	82,500,000
	2016. 4. 1.	9,482,000	24,662,000
대표)	2016. 5. 31.	4,180,000	
대표)	2017. 1. 26.	5,550,000	
	2017. 2. 16.	5,550,000	
대표)	2015. 12. 31.	440,000	902,000
	2015. 12. 31.	462,000	
	2015. 11. 17.	1,835,520	1,835,520
	2016. 2. 2.	37,110,000	136,070,000
	2016. 2. 29.	20,000,000	
	2016. 6. 30.	20,000,000	
	발행 일자: 2016. 7. 26.	약속어음 25,000,000	
	배서 일자: 2016. 8. 9.		
	어음 최종 결재일자: 2016. 9. 30.		
	2016. 8. 19.		
	2016. 9. 30.	5,000,000	
	2016. 10. 20.	5,000,000	





	2016. 10. 31.	15,960,000 (갑 제32호증에 의하면 20,000,000원이 입금되 었으나, 원고가 주장하 는 금액으로 인정)	
--	---------------	---	--

다.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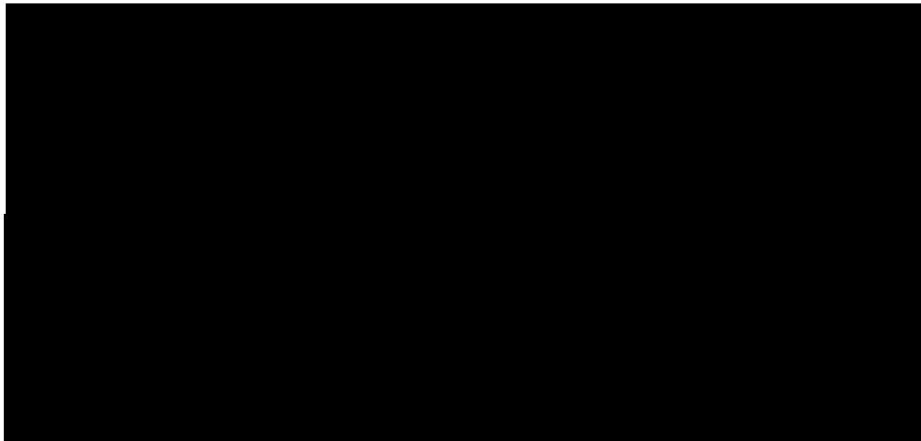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1,664,265원 (= 자재 구매 비용 92,606,745원 + 장비 비용 902,000원 + 설계 비용 76,320,000원 + 이행보증증권발급비용 1,83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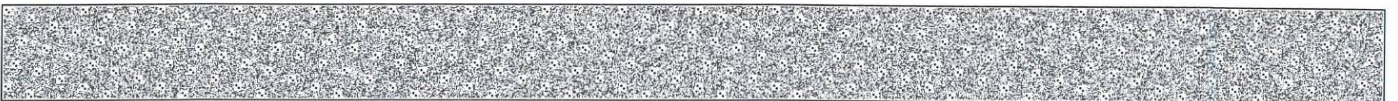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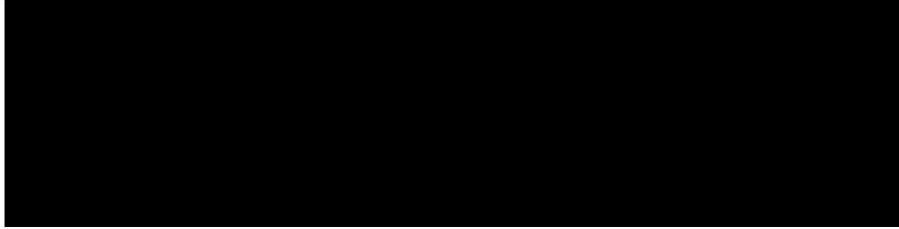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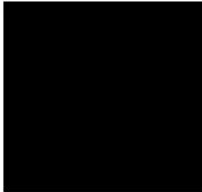
환경정책연구보고서

별지

목록

(각 금액 단위: 원)

순	매입	개	단위:	규격	재질	수량	단위:	종량	판매	판매금액	매입	매입금액	차액
			톤(t)				개(ea)		단가		단가		
		4 t	1524 x	6265	A240-304	4 ea		1,211	1,320	1,598,520	2,640	3,197,040	1,598,520
		4 t	1524 x	6740	A240-304	2 ea		652	1,320	860,640	2,640	1,721,280	860,640
		4 t	1524 x	6150	A240-304	4 ea		1,189	1,320	1,569,480	2,640	3,138,960	1,569,480
		4 t	1524 x	6530	A240-304	1 ea		316	1,320	417,120	2,640	834,240	417,120
		4 t	1524 x	8720	A240-304	2 ea		843	1,320	1,112,760	2,640	2,225,520	1,112,760
		4 t	1524 x	7896	A240-304	3 ea		1,145	1,320	1,511,400	2,640	3,022,800	1,511,400
		4 t	1524 x	7760	A240-304	5 ea		1,876	1,320	2,476,320	2,640	4,952,640	2,476,320
		4 t	1524 x	7000	A240-304	1 ea		338	1,320	446,160	2,640	892,320	446,160
		4 t	1000 x	7896	A240-304	7 ea		1,753	1,320	2,313,960	2,640	4,627,920	2,313,960
		4 t	1000 x	7760	A240-304	5 ea		1,231	1,320	1,624,920	2,640	3,249,840	1,624,920
		4 t	1000 x	5440	A240-304	2 ea		345	1,320	455,400	2,640	910,800	455,400
		5 t	1524 x	4000	A240-304	3 ea		725	1,320	957,000	2,640	1,914,000	957,000
		5 t	1524 x	8560	A240-304	1 ea		517	1,320	682,440	2,640	1,364,880	682,440
		5 t	1524 x	5982	A240-304	5 ea		1,807	1,320	2,385,240	2,640	4,770,480	2,385,240
		5 t	1219 x	5982	A240-304	6 ea		1,735	1,320	2,290,200	2,640	4,580,400	2,290,200
		6 t	1219 x	5200	A240-304	3 ea		905	1,320	1,194,600	2,640	2,389,200	1,194,600
		6 t	1219 x	6101	A240-304	4 ea		1,415	1,320	1,867,800	2,640	3,735,600	1,867,800
		6 t	1524 x	4210	A240-304	6 ea		1,832	1,320	2,418,240	2,640	4,836,480	2,418,240
		6 t	1219 x	4115	A240-304	1 ea		239	1,320	315,480	2,640	630,960	315,480
		7 t	1524 x	5875	A240-304	6 ea		2,982	1,320	3,936,240	2,640	7,872,480	3,936,240
		7 t	1524 x	4180	A240-304	1 ea		354	1,320	467,280	2,640	934,560	467,280
		7 t	1524 x	8090	A240-304	2 ea		1,369	1,320	1,807,080	2,640	3,614,160	1,807,080
		7 t	1524 x	7409	A240-304	9 ea		5,641	1,320	7,446,120	2,640	14,892,240	7,446,120
		7 t	1219 x	7409	A240-304	11 ea		5,515	1,320	7,279,800	2,640	14,559,600	7,279,800
		7 t	1219 x	5690	A240-304	2 ea		770	1,320	1,016,400	2,640	2,032,800	1,016,400
		8 t	1219 x	8367	A240-304	1 ea		647	1,320	854,040	2,640	1,708,080	854,040
		10 t	1524 x	4280	A240-304	1 ea		517	1,320	682,440	2,640	1,364,880	682,440
		12 t	1524 x	6010	A240-304	1 ea		872	1,320	1,151,040	2,640	2,302,080	1,151,040
		12 t	1524 x	6915	A240-304	2 ea		2,006	1,320	2,647,920	2,640	5,295,840	2,647,920
합						101 ea		40,747		53,786,040		107,572,080	53,786,040
		4 t	1524 x	7862	A240-304	1 ea		380	1,320	501,600	2,475	940,500	438,900
		4 t	1524 x	6970	A240-304	3 ea		1,011	1,320	1,334,520	2,475	2,502,225	1,167,705
		4 t	1524 x	8037	A240-304	1 ea		389	1,320	513,480	2,475	962,775	449,295
		4 t	1524 x	7595	A240-304	2 ea		734	1,320	968,880	2,475	1,816,650	847,770
		5 t	1524 x	8590	A240-304	9 ea		4,672	1,320	6,167,040	2,475	11,563,200	5,396,160
		5 t	1524 x	5982	A240-304	33 ea		11,929	1,320	15,746,280	2,475	29,524,275	13,777,995
		5 t	1524 x	4000	A240-304	8 ea		1,934	1,320	2,552,880	2,475	4,786,650	2,233,770
		5 t	1524 x	5860	A240-304	3 ea		1,062	1,320	1,401,840	2,475	2,628,450	1,226,610
		5 t	1524 x	6802	A240-304	2 ea		822	1,320	1,085,040	2,475	2,034,450	949,410
		5 t	1524 x	5357	A240-304	6 ea		1,942	1,320	2,563,440	2,475	4,806,450	2,243,010
		4 t	1000 x	6644	A240-304	6 ea		1,264	1,320	1,668,480	2,475	3,128,400	1,459,920
		6 t	1000 x	6440	A240-304	1 ea		306	1,320	403,920	2,475	757,350	353,430
		5 t	1219 x	5982	A240-304	16 ea		4,626	1,320	6,106,320	2,475	11,449,350	5,343,030
		5 t	1219 x	4640	A240-304	2 ea		449	1,320	592,680	2,475	1,111,275	518,595
		5 t	1219 x	5618	A240-304	2 ea		543	1,320	716,760	2,475	1,343,925	627,165
		5 t	1219 x	6802	A240-304	1 ea		329	1,320	434,280	2,475	814,275	379,995
		5 t	1219 x	5043	A240-304	5 ea		1,219	1,320	1,609,080	2,475	3,017,025	1,407,945
합						101 ea		33,611		44,366,520		83,187,225	38,820,705
총합계								74,358		98,152,560		190,759,305	92,606,745



정본입니다.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원주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